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0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대표 발의자 | 발의일 | 심 사 경 과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2201324) | 2024.7.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
| | 박성훈의원 (2203000) | 2024.8.2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
| | 김선교의원 (2203326) | 2024.8.2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

| 이달희의원 (2205588) | 2024.11.1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
|--------------------|-------------|---|
| 조은희의원 (2205777) | 2024.11.2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는 위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 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2 중 "홍보"를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

제55조제2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제10항 중 "판단되는 때"를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수행"을 "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 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제78조의4 중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 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 | 9의2 |
| 교육, 안전훈련, <u>홍보</u> 등을 통 | <u>홍보,</u> 사 |
| 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 | 고 예방 신고 장려 |
| 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 | |
| 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 | |
| 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 |
|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 |
| 을 말한다. | |
| | |
| 9의3. ~ 13. (생 략) | 9의3. ~ 13. (현행과 같음) |
|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
|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 |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
|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 |
|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 | |
| 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 |
|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 |
| 여야 한다. | <u>.</u> |
| 1. ~ 7의2. (생 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
| | 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 |

8. (생략)

- ② ~ ⑧ (생 략)
- (생 략)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 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 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 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다.
 - ③ ~ ⑥ (생 략) <신 설>

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 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 치 • 운영

- 8.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 긴급구조현장 |
| 지휘대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 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 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생 략)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 ②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장 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 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 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 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를 입은 사람과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 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 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계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 신사업법 1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1. (생략)
-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u>「개인정보 보호법」 제2</u> 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 <u>상정보처리기기</u>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 라. (생 략)

- ② ~ ⑨ (생 략)
- ①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 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 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 <u>.</u>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
|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① |
| |
| |
| |
|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
| |
| |
| |
| |
| 세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 |
| 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 |
| 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 |
| 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
| 위하여 영삿정부처리기기 통한 |

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 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 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 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 를 분석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 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 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전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 |
|---|---|
| | 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 |
| | <u>템의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u> |
| |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
| |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 |
| | 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줴 | 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
| | 원 의제) ① |
| | |
| | |
| | <u>종</u> 사 |
| | |
| |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
| |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u> </u> |
| | 조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
| |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
| |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
| |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 |
| | , |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 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 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 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 임직원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 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이외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 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 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